협 약 서

■ 사 업 명 :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 지원사업(연구개발 지원)

■ 협약기간 : 2021.5.3 ~ 2021.11.3(6개월)

■ 협약 당사자

○ 주관기관 :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지원인력(고경력 과학기술인) : 홍길동(1950년생)

○ 지원기업 : ㈜멘토나라(대표자명: 김멘티)

★간인★ →

협약서(3부) 앞장끼리

■ 사업비(당해년도)

○ 총 사 업 비 : 6,000 천원

○ 정부지원금 : 6,000 천원(교통비 별도 지급)

*총사업비= 정 부 지 원 금
(자 문 횟 수 에 따 라 기 재)
1 회 당 X 300 천 원

위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 지원사업(연구개발 지원) 수행에 관하여 주관기관과 지원인력, 지원기업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협약의 목적)

이 협약은 주관기관이 지원인력을 통해 지원기업의 애로기술과제를 해소토록 지원함에 있어 협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 등 제반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사업의 수행)

가. 지원인력은 지원기업의 애로기술과제를 자문해 주는 멘토로서 주관기관의 지원절차에 따라 애로기술과제 해결을 위해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지원기업은 자신의 애로기술과제 해결을 위해 지원인력과의 지원절차, 자문일정, 자문수여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나. 1일 1회 3시간 이상(한 주당 1회) 자문이 원칙이며, 사전고지 시 주 2회까지 가능하다.

다. 협약 기간 동안 최소 14주 이상 기술멘토링을 진행하여야 한다.
[10회: 7주, 15회: 10주, 20회: 14주, 25회: 17주, 30회: 20주 이상 진행]

자문횟수에 따라 기재

★접인★

협약서(3부) 페이지별 진행

가. 지원인력 및 지원기업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본 협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은 사전에 협약변경신청서에 의해 신청한다.

나. 협약의 변경은 1회로 한정하며, 사업종료 1개월 이전에만 가능하고, 협약기간의 연장은 불가하다.

다. 단, 불가피한 상황의 경우 주관기관의 승인 하에 지원인력과 지원기업 대표자의 서명이 들어간 사유서를 제출하고 사업종료 전까지 협약변경을 신청한다.

제7조(협약의 해약)

가. 주관기관은 지원인력 또는 지원기업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사업의 계속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2) 사업과 관련한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지원기업의 부도, 폐업, 파산 등으로 인해 동 사업의 수행이 정지되어 향후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한 경우
4) 지원인력 또는 지원기업이 지원자격을 지속적으로 갖추고 있지 못한 경우
5) 지원인력 또는 지원기업이 스스로 협약포기를 원하는 경우
6) 기타 지원인력 및 지원기업이 동 사업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협약일변경 금지

2021년 5월 3일

★날인★

주관기관 :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회장) (인)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37길 37 산기협회관

지원인력 : 고경력 과학기술인 (인)

주소 :

지원기업 : (대표) (인)

주소 :